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601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2인

2. 제안일자 : 2025년 10월 15일

3.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

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신 설>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삭 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현행법 제17조제1항[1]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 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의 사용 및 방문・체류를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음.

동 조항은 2004년 "김선일 사건[2]" 발생 후 이러한 사건이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7년 1월 위험지역 방문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3]으로, 2007년 7월 샘물교

1)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2) 2004년 6월 22일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인 가나무역의 직원 김선일이 이라크의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에 납치되어 피살된 사건

회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4] 시 정부의 여행금지 제도 여부가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지역[5]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여권 사용 여부 불문)한 경우에는 여권 행정제재(여권 발급 거부, 반납 명령, 무효화) 및 형벌[6](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체류 위반 및 고발 건수>

연도	위반(적발) 건수	고발 건수	비고
2021	3	5	
2022	8	14	
2023	11	2	
2024	36	9	
2025.10.	34	5	
계	92	35	

(자료: 외교부)

3)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신설

4) 2007년 7월 19일, 분당샘물교회 교인 23인이 선교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여, 현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단체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건으로 교인 2인이 살해되었으며, 샘물교회 피해자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여행금지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5)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제2025-9호, 2025. 11. 12.)」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ㅇ 11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⑫ 니제르 일부지역(수도 니아메 제외 전 지역)

6)「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개정안은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변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위험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함.

특히, 위험지역 방문은 국가적 외교분쟁이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 수준의 형사적 억제 장치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형벌 수준을 정함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시 처벌 규정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허가 없이 특정 지역 출입·체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당한 허가나 승인 없이 입국·체류하거나 금지구역을 방문한 경우에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개정안과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여행금지구역 방문·체류 위반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처벌규정
출입국 관리법	유효한 여권·사증·외국인입국허가서 없이 입국한 사람 (제7조제1항·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4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17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

그런데, 현행법 상의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행위는 국가안보나 타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보다는 본인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 위험 행위의 성격이 강한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동기와 정도,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형벌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둘째, 형벌 수준이 강화될 경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외공관이나 정부에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조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구조가 지연될 우려도 있음.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가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외교부는 현재 여권 반납명령, 재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으나,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바[7],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전 경고체계의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비형벌적 보완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외교부는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66

7)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뉴스핌, 2024. 10. 7. 11:4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07000491)